

FTA 체결에 따른 지방세 현안과제

원윤희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I. 머릿말

우리나라는 2002년 한·칠레 FTA 타결을 시발로 하여 이후 한·싱가포르, 한·FTA, 한·ASEAN, 그리고 2007년 한·칠레 FTA 등 5개의 자유무역협정 또는 상품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또한 현재 한·EU 등 6개의 협정체결을 위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한·중 등 3개의 협정과 관련하여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등 체결을 위한 여건조성이 이루어지는 단계에 있다.

FTA는 기존에는 관세인하와 무역자유화에 초점을 두던 것이, 1995년 WTO 체제 출범이후에는 관세철폐,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무역규제제도, 경쟁정책 등 그 범위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 즉, FTA 체결은 단순히 무역협정 자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제 및 무역, 투자환경은 물론 제반 사회경제 환경이 국제표준에 부합하게 변화되고 또 개방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미 FTA의 체결은 우리나라 지방세제에도 여러 가지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협정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자동차세 세율구조의 변화나 사후대책의 하나로 제시된 도축세의 폐지 등은 직접적인 현안과제로서 그와 관련한 법령 개정이나 재원대책 등의 제반 보완대책들이 논의되고 추진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직접적인 현안 이외에도 우리의 지방세제나 지방세정을 개방화 시대의 국제 표준

에 부합할 수 있도록 그 중장기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논의들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고는 한미 FTA 체결이 우리나라의 지방세제에 야기하는 직접적인 현안과제들의 내용과 향후 대책을 중심으로 논의하며, 개방화 시대에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우리 지방세제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본다.

II. 주요 현안과제

1. 자동차 세제 개편

가. 협정의 주요내용

자동차 세제의 개편은 한미 FTA 협정에서 합의된 중요한 내용중의 하나로서 기본적으로 국세인 특별소비세와 지방세인 자동차세의 세율체계에서 배기량에 따른 세율의 격차를 완화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아래 그림에 제시된 바와 같이 우선 2000cc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을 현행 10%에서 8%로 인하하고, 협정발효일로부터 3년 이내에 5%로 인하하며 이 인하는 3년간 매년 균등하게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 현 행 | | ⇒ | 타 결 안 | |
|-----------|-----|---|--------------------|-----------|
| 800cc이하 | 0 | | 1,000cc이하 | 0 |
| 2,000cc이하 | 5% | | 1,000cc초과~2000cc이하 | 5% |
| 2,000cc초과 | 10% | | 2,000cc초과 | 8% ==> 5% |

또한 대한민국은 차종별 세율의 차이를 확대하기 위하여 배기량에 기초한 새로운 조세를 채택하거나 기존의 조세를 수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새로운 자동차를 구매하는 즉시 도시철도공채와 지역개발공채의 약 80%를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고, 환불비율은 채권에 대한 현행 시장이자율에 따라 변경되도록 하고 있다.

자동차세의 경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세율구간을 다음 그림이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세율을 인하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 현 행 | | ⇒ | 타 결 안 | |
|-----------|------|---|-----------|------|
| 800cc이하 | 80원 | | 1,000cc이하 | 80원 |
| 1,000cc이하 | 100원 | | 1,600cc이하 | 140원 |
| 1,600cc이하 | 140원 | | 1,600cc초과 | 200원 |
| 2,000cc이하 | 200원 | | | |
| 2,000cc초과 | 220원 | | | |

나. 자동차세 개편에 따른 세수효과 및 세수보전 문제

한국조세연구원과 재정경제부는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자동차 관련 국세수입의 변화를 추정하고 있는데,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경우 시행 5년차까지 연평균 약 2,800여억원, 그리고 6~10년차 기간중에는 연평균 약 4,000여억원의 세수감소를 예상하고 있다. 한편 추정이 이루어진 특별소비세 이외에도 특별소비세의 30%로 부과되는 교육세와 이들을 합한 금액의 10%인 부가가치세 세수도 감소하게 될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세인 자동차세 개편에 따라 발생하는 세수감소 규모를 추계하고 있는데,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2009년~2013년 기간동안 매년 평균 약 1,715억원으로 추계되고 있다.

<표 1> 자동차 관련 지방세수 감소분 추계결과¹⁾

(단위 : 억원)

| 구 분 | 합 계 | 자동차세 | 지방교육세 |
|------|-------|-------|-------|
| 평균 | 1,715 | 1,320 | 396 |
| 2009 | 1,578 | 1,214 | 364 |
| 2010 | 1,641 | 1,262 | 379 |
| 2011 | 1,717 | 1,321 | 396 |
| 2012 | 1,786 | 1,374 | 412 |
| 2013 | 1,855 | 1,427 | 428 |

주) 1) 한미 FTA가 2009년부터 발효된다는 전제아래 2007.6.1 현재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연간 증가대수(50만대)를 감안하고, 차령 3년부터 1년마다 5%씩 자동차세를 경감(최고12년 50%)하는 현차·새차 차등과세를 적용함.

자료: 행정자치부.

한편 자동차 관련 세수의 용도는 세목별로 다르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세수 감소가 지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도 부문별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승용차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경우 그 세수에 상당하는 금액만큼이 교통시설특별회계 도로계정으로 귀속되고 있는데 협정 발효후 5년간을 보면 연평균 2,82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1,320억

원, 그리고 교육재정도 1,242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방세인 자동차세의 세수감소에 대한 재원보전대책과 관련하여 그 감소분의 일정부분을 주행세의 인상을 통해서 보전하도록 하는 방안이 현재 관련 부처와 논의중에 있다.

〈표 2〉 자동차 관련 세수의 용도 및 연평균 감소 예상액

| 세목 | | 세수 귀속 | 발효후 5년간 연평균 감소추정액 (억원) |
|-----|-----------|----------------|---------------------------|
| 국 세 | 부가가치세 | 일반회계 | 367 |
| | 승용차 특별소비세 | 교통시설특별회계 도로계정 | 2,820 |
| | 교육세 | 교육재정교부금 | 846 |
| 지방세 | 자동차세 |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 1,320 |
| | 지방교육세 |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 396 |

승용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인하와 자동차세 인하 등은 앞으로 자동차 및 유류 관련세제가 운행과세 중심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자동차 및 유류 관련 세제는 기본적으로 부담능력에 따른 누진과세의 의미를 강하게 반영하고 있었던 것인데, 누진세율 체계의 특별소비세나 배기량에 따른 강한 누진세 체계가 반영되어 있던 자동차세, 자가용 승용차에 대한 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과, 그리고 자가용 승용차의 사용연료인 휘발유에 대한 중과 등 세제의 많은 부분에서 소득재분배적인 정책목표가 강하게 반영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소득과세의 미비 등에 따라 자가용의 소유 여부나 소유 자가용의 배기량 등이 그 소유자의 부담능력을 소득보다 오히려 잘 반영하고 있다는 현실적인 인식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유류에 대한 우리나라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향후 자동차 및 유류 관련 세목들이 전체 세수에서 점하는 비중은 점차 하락하게 될 것이지만, 자동차 유류관련 세제 내에서 보유관련 과세보다는 운행에 따른 과세가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게 될 것이다.

2. 도축세 폐지문제

가. 과세현황

2007년 4월 2일 한미 FTA 타결과 함께 발표된 보완대책은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경우 자금융자·컨설팅 등 구조조정 지원과 근로자 고용안정 지원을, 그리고 농업과 수산업의 경우 품목별 피해보전

및 경쟁력 강화를 그 핵심으로 하고 있다. 도축세 폐지는 농업분야에 대한 경쟁력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제시되고 있다.

도축세는 특별시·광역시세와 시·군세로서 도축장 소재 시·군에서 도축장 경영자 등에 의해 특별징수 방법으로 과세하는 행위세 또는 소비세이다. 서울은 도축하는 소·돼지의 시가의 1%를 한도로 하는 제한세율로 설정되어 있으며, 시장·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율을 1% 이하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과세표준이 되는 소·돼지 시가의 가액은 매년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가 조사·결정하고 있다.

이러한 도축세는 우리나라 지방세목 중에서 가장 그 역사가 오랜 세목중의 하나이다. 구한말 한성부에 도축세, 경기도에는 도장세가 도입되었으며 해방이후에도 도축세로 과세되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전체 지방세수에서 점하는 세수비중은 '60년대 중반 1.5%에서 '90년대 초반에는 0.27%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으며, 2005년 세수는 469억원으로 지방세 총액 35조 9,774억원의 약 0.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도축장이 위치한 일부 자치단체들의 경우 도축세가 지방세수에서 점하는 비중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경북 고령군의 경우 도축세가 지방세에서 점하는 비중은 15.1%에 이르고 있으며 그 세수비중이 3%를 초과하는 자치단체도 13개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 자치단체별 도축세 비중 (2005)

(단위: 백만원, %)

| 자치단체 | 도축세(A) | 지방세(B) | A/B *100 |
|-----------|--------|------------|----------|
| 지방자치단체 전체 | 46,906 | 35,977,359 | 0.13 |
| 고령군 | 1,574 | 10,440 | 15.08 |
| 군위군 | 830 | 6,701 | 12.39 |
| 창녕군 | 930 | 16,838 | 5.52 |
| 나주시 | 1,409 | 26,378 | 5.34 |
| 함평군 | 348 | 6,781 | 5.13 |
| 북제주군 | 1,246 | 25,095 | 4.97 |
| 김제시 | 1,165 | 23,570 | 4.94 |
| 홍성군 | 966 | 20,079 | 4.81 |
| 증평군 | 350 | 7,638 | 4.58 |
| 철원군 | 379 | 9,539 | 3.97 |
| 청원군 | 1,470 | 45,003 | 3.27 |
| 논산시 | 887 | 29,292 | 3.03 |

자료: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연감』, 2006

도축세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동안 별다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이 세목이 도입된 지 매우 오래 되었기 때문에 그 존재가 당연시 되어왔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도축세는 과거에는 쇠고기와 돼지고기 소비에 대한 일종의 사치세적인 의미도 가지는 등 그 성격은 시

〈표 4〉 시도별 도축허가건수 분포

| 구 분 | 소 | | | 돼지 | | | |
|----------------|-------|---------|---------|---------|------------|------------|------------|
| | 2003 | 2004 | 2005 | 2003 | 2004 | 2005 | |
| 도축허가 두수 (두) | 서울 | 78,624 | 96,914 | 100,276 | 567,893 | 533,902 | 418,478 |
| | 부산 | 13,325 | 11,948 | 12,990 | 111,060 | 80,446 | 80,587 |
| | 대구 | 11,076 | 10,172 | 10,739 | 318,731 | 267,768 | 218,532 |
| | 인천 | 13,080 | 9,452 | 10,339 | 408,705 | 388,576 | 331,414 |
| | 광주 | 16,953 | 14,710 | 16,834 | 171,701 | 191,896 | 184,631 |
| | 대전 | 8,041 | 7,482 | 9,501 | 214,004 | 187,454 | 161,289 |
| | 울산 | 12,926 | 11,224 | 14,527 | 182,280 | 158,813 | 159,615 |
| | 경기 | 130,820 | 132,579 | 132,488 | 3,641,887 | 3,473,133 | 2,972,658 |
| | 강원 | 39,473 | 37,331 | 40,403 | 787,522 | 717,357 | 720,166 |
| | 충북 | 36,269 | 33,894 | 36,026 | 1,767,218 | 1,657,220 | 1,619,012 |
| | 충남 | 32,229 | 25,140 | 35,995 | 1,233,816 | 1,257,387 | 1,263,221 |
| | 전북 | 43,378 | 40,722 | 29,502 | 1,142,552 | 1,223,950 | 1,175,824 |
| | 전남 | 36,243 | 34,232 | 38,585 | 828,876 | 722,058 | 687,683 |
| | 경북 | 59,443 | 59,434 | 67,414 | 1,410,414 | 1,405,817 | 1,232,951 |
| | 경남 | 50,783 | 49,650 | 54,770 | 1,897,785 | 1,741,478 | 1,680,574 |
| | 제주 | 1,590 | 1,690 | 2,083 | 602,172 | 612,991 | 558,360 |
| | 합계 | 584,253 | 576,574 | 612,472 | 15,286,616 | 14,620,246 | 13,464,995 |
| | 비중(%) | 서울 | 13.5 | 16.8 | 16.4 | 3.7 | 3.7 |
| 부산 | | 2.3 | 2.1 | 2.1 | 0.7 | 0.6 | 0.6 |
| 대구 | | 1.9 | 1.8 | 1.8 | 2.1 | 1.8 | 1.6 |
| 인천 | | 2.2 | 1.6 | 1.7 | 2.7 | 2.7 | 2.5 |
| 광주 | | 2.9 | 2.6 | 2.7 | 1.1 | 1.3 | 1.4 |
| 대전 | | 1.4 | 1.3 | 1.6 | 1.4 | 1.3 | 1.2 |
| 울산 | | 2.2 | 1.9 | 2.4 | 1.2 | 1.1 | 1.2 |
| 경기 | | 22.4 | 23.0 | 21.6 | 23.8 | 23.8 | 22.1 |
| 강원 | | 6.8 | 6.5 | 6.6 | 5.2 | 4.9 | 5.3 |
| 충북 | | 6.2 | 5.9 | 5.9 | 11.6 | 11.3 | 12.0 |
| 충남 | | 5.5 | 4.4 | 5.9 | 8.1 | 8.6 | 9.4 |
| 전북 | | 7.4 | 7.1 | 4.8 | 7.5 | 8.4 | 8.7 |
| 전남 | | 6.2 | 5.9 | 6.3 | 5.4 | 4.9 | 5.1 |
| 경북 | | 10.2 | 10.3 | 11.0 | 9.2 | 9.6 | 9.2 |
| 경남 | | 8.7 | 8.6 | 8.9 | 12.4 | 11.9 | 12.5 |
| 제주 | | 0.3 | 0.3 | 0.3 | 3.9 | 4.2 | 4.1 |
| 합계 |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자료 : 농림부 홈페이지

대에 따라서 다소 달랐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도축세는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기피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도축장이 위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악취나 수질오염 등 제반 외부효과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부과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06년말 현재 전국에 도축장은 151개가 있으며 이 중에서 소와 돼지의 도축실적이 있는 도축장은 93개로 나타나고 있다. 도축허가 두수의 지역별 분포는 소와 돼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경기도가 가장 많아서 전체의 22~23% 수준이며, 서울, 경북, 경남, 충북 등의 비중도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폐지에 대한 찬반 논의

축산업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도축세 폐지주장의 논거는 기본적으로 그 세부담이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가격상승 요인이 됨으로써 우리나라 축산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된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미국이나 캐나다 등 주요 축산물 수출국에는 도축세가 없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도축세 폐지를 반대하는 주장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도축세는 축산농가로부터 소·돼지를 매수하여 도살하는 식육업자 등에 과세되므로 도축세는 축산농가에 전가되는 것이 아니라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소비세로서 폐지되어도 축산농가에게는 이익이 없다는 것이다. 둘째, 각 시·군은 도축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구제역 방제활동 등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서라도 도축세는 폐지될 수 없다는 입장이며, 오히려 육류소비의 다변화 추세에 맞추어 과세대상을 현행 소, 돼지 외에 닭·오리·염소·말 등으로 확대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도축장 151개 중에서 58개는 소와 돼지가 아닌 닭 등 다른 육류에 대한 도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셋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축세가 지방세에서 점하는 비중은 0.13%에 불과하지만, 경북 고령군 등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도축세의 세수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를 폐지할 경우 해당 시·군의 재정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도축세 폐지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세수감소분에 대한 재원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이다. 특히 고령군이나 군위군 등의 경우 도축세가 군 전체 세수의 12~15%를 점하는 상황에서 보전재원 여부는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 지방교부세를 이용하는 방안이나 농림부의 국고보조사업을 배정하는 방안 등 각종 재원보전방안들이 관련 부처들 간에 다각도로 검토되고 있다.

과연 도축세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와

같이 소와 돼지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방식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만약 이 세목이 사치세적인 소비세의 성격이라면 가격이 과세표준이 될 수 있는 것이지만, 과연 현 시점에서 쇠고기와 돼지고기 소비가 사치적 소비인가에 대해서 동의할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만약 도축세를 악취나 오염과 같은 외부효과에 대한 과세라고 한다면 그 과세표준은 외부효과 정도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는 도축되는 가축의 두수나 사업장의 면적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또 소와 돼지만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도축도 과세대상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지역에 미치는 외부효과에 대한 과세로서 그 성격을 규정한다면 굳이 도축세라는 별도의 과세 형식을 택하기 보다는 지역개발세 등에 포함시켜 과세하는 것이 세제간소화 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외부효과 피해는 해당 도축장이 위치한 지역이 받게 되는데 지역개발세는 광역자치단체 세목이라는 점에서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이라는 성격이 명확하게 반영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나타나게 된다.

전체적으로 볼 때 현시점에서 소와 돼지의 도축에 대해서 도축세라는 별도의 세목으로 과세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여겨진다. 다만 외부효과로 인한 주민기피시설이라는 측면에 대해서 과세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III. 개방화시대 지방세제 발전방향

한미 FTA의 체결과 함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나라들과의 FTA 체결협상은 궁극적으로 우리나라가 점차 개방화되고 제반 제도들이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나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지방세 분야에서도 이러한 개방화에 따른 제반 개혁의 필요성은 많은 분야에서 제기되게 될 것이다.

목적재원으로서의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않으면서 지방세의 체계를 복잡하게 만드는 각종 목적세를 정비함으로써 지방세 체계를 투명하고 간소하게 만들어가는 노력이 우선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현재 과세가 중단되고 있는 농업소득세의 경우 국세인 소득세로 통합하는 것이 세제간소화와 함께 포괄적 소득세제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조세체계의 정비와 함께 지방세법의 간소화 및 전문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지방세법과 시행령의 빈번한 개정으로 법체계의 복잡성이 심화되고 있으며, 지방세법이 단일법으로 운영됨으로써 야기되는 제반 한계도 극복할 수 있는 개편이 필요할 것이다.

지방세 과표산정 체계를 국제평가기준에 부합하도록 재정립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주택 및 토지의 경우 시가법에 따른 과표산정 체계인데 반하여 건물의 경우 원가법에 따른 과표산정으로 시가와 의 괴리가 초래되고 과세 불형평성이 야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건물에 대한 재산세 과표산정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정비하고 지방세지출예산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노력도 한층 가속화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정한 정책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조세의 비과세·감면제도는 정책목표가 달성된 이후에도 그 속성상 기득권화되어 존치하게 됨으로써 자원배분의 왜곡과 세부담의 불공평을 야기하고 세수감소를 초래하는 것이다. 개별 조세지출 항목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그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됨으로써 불필요한 조세지출의 폐지나 축소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지방분권화 또는 지방자치는 세계적인 추세이며, 개방화 시대에 지역들이 세계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국가경쟁력 강화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지역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기 위해서는 지역들이 창의성을 가지고 그 부존자원을 활용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제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자율과 책임이라는 지방자치의 기본이념을 실현하는 정책수단으로서 지방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조세가격(tax price)로서의 지방세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자율과 책임이라는 지방자치 메카니즘을 실현하는 정책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인데, 지역주민들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의하여 사업이 추진되면 그에 필요한 재원부담의 많은 부분이 지방세를 통하여 조달되도록 하고 그 연계관계가 세율 등을 통해서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자치단체 세입중 지방세 비중이 높아질 수 있도록 지방세를 강화함으로써 지방세의 조세가격으로서의 기능이 보다 잘 발휘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